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새만금 갯벌 살리기 위한 자전거 홍보단”이 지난 7월 12일 오후 전주 전북도청 앞에 도착, 새만금 반대 집회를 열기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사건 선고 전까지 전면 중단됐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이 원고승소 가능성까지 일정부분 고려해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백지화 내지 전면수정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방조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애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으로 방조제가 완성돼 담수호가 오염될 경우 회복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등 손해를 입게 되고 방조제공사중 미완공 부분도 조만간 완공예정에 있어 본안 선고에 앞서 집행을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토석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입계될 수질오염이나 갯벌파괴 등 환경피해에 비하면 집행정지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

539명은 재작년 8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 6월 본안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서면공방과 현장점증을 끝내고 관계자 증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증언이 없다면 늦어도 2~3달 안에 본안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7.16]

환경단체 “‘새만금’ 법원결정 환영”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진 지난 7월 15일 환경·시민·종교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의해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이젠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실망감을 나타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36개 환경·시민·종교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의 수용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4공구 방조제 구간을 즉각 해체해 바닷물을 유통시키라”고 촉구했다.

평화연대는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정부가 새만금 보전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분열된 국론을 한곳으로 모아 친환경적인 전북 발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중단을 위해 삼보일배(三步一拜) 시위에 나섰던 문규현 신부는 “파괴된 자연과 인간의 가치를 되찾고 인간의 잘못을 참회하자는 삼보일배 정신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이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모임’의 주용기 집행위원장은 “당초 농지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이 사업이 그 목적을 잊었고, 갯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고무적인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7.16]

집회소음 규제, 부처간 떠넘기기로 3년 넘게 표류

시위·집회 때의 확성기 소음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환경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3년 넘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집회소음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부의 소음·진동 규제법과 경찰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소음·진동규제법은 행정 등에 의한 이동소음과 주거관련 생활소음 규제에 국한돼 있고 집시법에는 집회 때의 확성기소음 규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환경부와 경찰청은 소음 시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지난 99년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00년 중순부터 회의를 열면서 대책마련을 시도해 왔으나 아직까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정한 목적으로 집회가 이뤄지는 만큼 일반 공무원이 집회 소음을 제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소음·진동법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음·진동규제법으로는 소음시위를 규제할 강제수단을 확보할 수 없으며 집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회가 열리는 만큼 집시법에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역시 “소음시위와 관련한 불만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면서도 “집시법상 확성기 소음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집시법에 소음규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것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음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들의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사회적 현안을 조절할 생각은 않고 갈등만 키워 집회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7.9]

미세먼지 많은 대도시 주민 발암위험 4배 높다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뒤큕김닭을 즐기는 사람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배를 많이 먹으면 이 같은 위험성이 4분의 1 수준으로 반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의대 양미희 교수와 아주대 의대 장재연 교수팀은 지난 2000년부터 올초까지 서울과 수원, 대전, 충주, 포항, 경주 등 6개 도시지역 주민 660명을 대상으로 인구밀도와 공기중 미세 먼지 농도에 따른 발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미세 먼지는 직경 $10\mu\text{m}$ ($1\mu\text{m}$ 은 1백만분의 1m) 이하의 먼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먼지와 다르다. 워낙 크기가 작아 코나 기관지의 섬모가 미처 걸려주지 못하므로 쉽게 폐포 깊숙이 침투한다. 대기 중 미세 먼지의 70%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미세 먼지엔 ‘벤조에이파이렌’ 같은 발암물질이 공기 중보다 수백배 이상 농축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는 같은 오염 상태라도 미세 먼지가 많을수록 인체가 입는 피해가 훨씬 커진다는 뜻이다. 벤조에이파이렌은 또한 불에 태우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도 많이 들어있다.

양 교수팀은 인체의 신진대사과정에서 벤조에이파이렌으로부터 파생된 물질 ‘원-하이드록시파이렌’이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지역주민과 뒤큕김닭을 즐겨먹는 사람들의 소변에서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수원(인구밀도 $7853\text{명}/\text{km}^2$, 미세먼지 $66\mu\text{g}/\text{m}^3$) 주민이 평균 $0.058\mu\text{g}/\text{l}$ 로 가장 많았고, 서울($17131.7\text{명}/\text{km}^2$, $71\mu\text{g}/\text{m}^3$) 주민 $0.020\mu\text{g}/\text{l}$, 대전·충주($2575.8\text{명}/\text{km}^2$, $54\mu\text{g}/\text{m}^3$) 주민 $0.019\mu\text{g}/\text{l}$, 경주·포항($220.1\text{명}/\text{km}^2$, $42\mu\text{g}/\text{m}^3$) 주민 $0.014\mu\text{g}/\text{l}$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로써 인구밀도와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곳일수록 주민들의 발암물질 검출량도 거의 비례해서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표적인 서구형 고지방식으로 꼽히는 뒤큕김닭 섭취 여부에 따라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4시간 이내 뒤큕김닭을 먹은 사람($0.089\mu\text{g}/\text{l}$)의 소변에서



원-하이드록시파이렌이 그렇지 않은 사람($0.019\mu\text{g}/\text{l}$)

보다 4배나 많이 검출된 것. 이는 튀김닭 등 튀김류가 그 만큼 체내에 발암물질을 많이 축적시키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조사대상자 중 배를 먹지 않은 사람의 원-하이드록시파이렌 검출량($0.021\mu\text{g}/\text{l}$)이 배를 먹은 사람의 검출량($0.005\mu\text{g}/\text{l}$)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돼 눈길을 끌었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해 “배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나 효소가 미세먼지와 튀김식품으로 인한 독성물질을 배설시킴으로써 발암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동물실험 등을 통해 배의 암예방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7.9]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한명숙 환경부장관 일문일답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3일 환경부 기자실에 들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자축하며 “10년 내에 수도권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규용(李圭用) 기획관리실장과 고윤화(高允和) 대기보전국장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지난 7월 2일 끝났는데.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쁘다. 10년 내에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 현재의 에너지 체계에서는 LPG를 쓰는 택시까지 경유차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작업에 곧 착수해 국제수준으로 맞출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이 현재 100대 75대 60이다. 그러면 휘발유차의 70%가 경유차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재정경제부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 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은 100대 80~89 수준이다.

– (수도권) 지역별 배출 허용총량을 초과해 공장 신·증설이 규제된다면 사업장총량을 지킨 공장은 증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닌가.

▲ 아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오염물질을 100t 배출해야 할 공장이 60t까지 줄였다면 나머지 부분인 40t까지는 증설이 가능하다. 또 총량을 초과한 지역이라도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도권 내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신·증설을 요청할 경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사업장 총량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공장에 대한 혜택은.

▲ 기본배출부과금이 면제되며 저유황 연료 사용 의무가 없어진다.

– 사업장별 총량을 지키지 못했다면.

▲ 당해연도 초과배출량의 2배 범위 내에서 다음 해 배출허용 총량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t까지만 배출해야 할 의무량이 주어졌는데 120t을 배출했다면 다음 해에는 최고 40t이 줄어든 60t의 총량만 허용된다. 물론 초과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초과 부과금이 부과된다.

– 배출권 거래제는.

▲ 오염물질 배출량을 의무량보다 많이 삭감했을 때는 삭감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다음 해에 사용하기 위해 예탁할 수 있다. 반대로 의무량을 초과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배출권을 구입해 오염물질 배출총량 기준을

맞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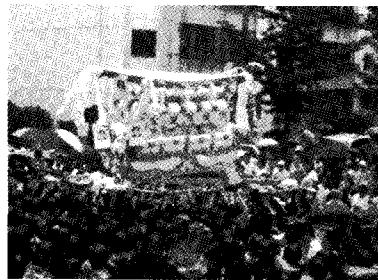
- 사업장 구분은

▲ 1종 사업장은 무연탄 열량 기준으로 1년에 1만t 이상, 2종은 2천 1만t, 3종은 1천 2천t의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을 가리킨다. 그러나 수도권 특별법 시행 전에 연료가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재구분할 것이다.

[중앙일보 7.5]

소각정책 지역 분열 조장

- 집회 시위 잇따르고 고소, 고발 난무



한 논쟁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정부의 소각정책이 지역분열을 일으키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소각은 자원을 훼손시키는 기술이며, 아무리 안전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자연을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소각보다는 재활용정책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소각장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집회와 시위, 논쟁을 보면 지난 7월 1일 경남 마산시 진동면에서는 주민들이 인근 국도를 점거해 한동안 차량통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김해시 생림면에서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거부” 시위로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며칠동안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지난 5월에는 경남 진해시의 소각장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6월초 부산에서는 소각장 운영과 관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환경단체 대표인 대학교수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가 하면,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지역시민단체가 전 현직 시장 등 관계자 13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집회와 시위, 논쟁이 그칠 줄 모르는 것은 정

부가 폐기물 처리의 많은 부분을 소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처리구조는 매립비율이 줄어들고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면서도 소각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매립 43.3%, 재활용 43%, 소각 13.6% 등이며, 생활폐기물 가운데 가연성 폐기물이 5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좁은 국토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소각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는 1천912개소의 크고 작은 소각로가 설치 운영중이며, 환경부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국고 649억6천700만원을 지원해 앞으로 41개소를 더 건설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14개소를 증설할 방침으로 현재 부산, 대전, 경남, 제주 등 7개소에 일일 50톤 이상의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1년 13.6%에 머물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비율이 올해 14개소가 완공되면 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쓰시협 관계자는 “정부가 불확실한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는 확실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자자체의 소각장 건설에 무차별적 지원을 해 왔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자체가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전제하에 입지선정에 나서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지와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구조에서 그 이전에 소각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주민합의 절차가 선행된다



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일보 7.4]

환경정책 발목 잡는 이기주의

부처이기주의 또는 집단이기주의로 친환경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련의 사태들이 촉발하면서 환경정책이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뒷걸음질을 치게 될 위기에 놓였다.

규제개혁위원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조항 삭제권고,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추진, 대한상공회의소의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 반대입장 표명, 하수슬러지 적매립 금지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에 대한 책임을 환경부로 떠넘기려는 태도 등 친환경정책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대체용기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7월 1일부터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분해성 재질로 대체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환경부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그린벨트 내에 30만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이 자동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이 의원발의로 입법추진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000년 12월 발의한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과 관련, 기업들의 환경투자 의지의 감소와 경영부담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적매립이 금지되는 하수슬러지와 관련, 73%가 해양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부 문제”라며 관련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환경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정책 발목 잡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쓰시협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시민들이 합심해 진행해온 합성수지 폐기물 감량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환경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는 “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하수슬러지가 환경친화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법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의 의견은 과거 기업경영이익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축소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특정이익집단에 의한 법의 무시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집단의 논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입안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5개 단체는 임대주택특별법을 “반환경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환경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부처 및 상임위원회의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제정중단과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력화 될 위기를 느낀 환경부도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중 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을 자동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조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일보 6.30]

국민 절반 환경정책 블라

국민의 절반가량이 오존경보 발령 상황을 모른 채 생활하는 등 환경정책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한달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252명의 응답자 중 46%인 574명이 평소 오존경보의 발령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고 18%인 228명은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하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존에 노출되면 눈이 따가워지고 호흡기 자극이 증가해 기침 등이 유발된다.

오존경보가 발령될 때 외출·실외운동 등을 자제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6%인 450명에 불과했다. 또 페스트푸드점이 1회용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100원을 환불해 주는 제도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



천110명 중 절반이 1천552명이 이를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별로 실시되는 환불제 홍보 외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를 맞아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8천539명 중 60%인 5천 140명이 댐 건설이라고 대답했다. 물 절약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27%인 2천288명, 쓰고 난 물을 걸러 화장실용 등으로 사용하는 중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인 86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향신문 7.3]

4대강 수질개선 왜 엇둔만 썼나



정부는 1998년 한강 특별대책을 세우면서 2급수인 한강 팔당호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

수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왔다. 그러나 투자에 비례해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수질개선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대강 오염 현황=상수원인 한강 팔당호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199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수질농도가 1.0ppm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1.1ppm으로 2급수로 전락한 이후 97~99년 3년 동안 1.5ppm으로 더 나빠졌다. 2000년에는 1.4ppm으로 다소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2001년 1.3ppm으로 수질이 좋아져 '1급수 달성'에 대한 기대감

을 갖게 했다. 하지만 2002년 들어 1.4ppm으로 다시 악화됐다.

낙동강(물금 기준)은 90년 3.0ppm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인 95년에는 5.1ppm으로 최악의 수질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3.0ppm으로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급수에 머물고 있다. 금강(부여 기준)은 90년 3.1ppm에서 95년 4.3ppm으로 오염이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다소 개선됐지만 2001년 3.7ppm으로 여전히 3급수 수준이다. 영산강(나주 기준)은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쁘다. 90년 6.7ppm이던 것이 94년에는 7.3ppm으로 최악의 수질을 기록한 이후 2001년 6.2ppm으로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질, 왜 개선되지 않나=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거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과 세수증대 등을 이유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연구위원은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강 유역의 토지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다 수질오염을 놓고 강의 상 하류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더욱이 수질개선 예산을 포함한 환경관련 예산은 환경부 이외에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으로 분산돼 집행되는 점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수질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수질개선 분야는 매년 예산이 삭감돼 정부의 수질개선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책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분야의 예산 삭감은 정부가 수질오염을 해결할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6.25]

『미디어로 본 환경』은 시기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다름으로서 환경기술인들이 폭넓은 환경을 이해하고 접근토록 기획되었다.

[편집자 주]